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944호, 2026. 9. 15. 공포, 2026.12.16. 시행)됨에 따라,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서도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보장에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개정(12.16 시행)에 따라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8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 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 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생략) 2. <u>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이 보장되어 있을 것</u>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6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이 보장되어 있을 것.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 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 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 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 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u>

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
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
로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124